

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(회사의 이익 → 총주주의 이익 or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)에 대한 비상장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정책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.
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.

※ 담당자 :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 김재호 연구원 (전화 : 02-6050-3842)

※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의 (기업 Value-up 정책 등과 연계)

- 주요기업의 합병과 분사 후 IPO 등 분사 후 IPO 등은 회사 및 지배주주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지만 기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 → 주주평등원칙 위반

-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이익 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을 추가해 상기 사례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논의

* 상법 개정안 : [현행]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)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**회사를 위하여**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→ [개정] **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** or **회사의 총주주를 위하여**

0. 귀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‘총주주의 이익’ 또는 ‘주주의 비례적 이익’으로 확대해 주주 손해를 배상하게 하자는 상법 개정논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? (Y/N)
1. 귀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‘총주주의 이익’ 또는 ‘주주의 비례적 이익’으로 확대해 주주 손해를 배상하게 하자는 상법 개정논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 (Y/N)
2. 귀사는 향후 상장 계획이 있습니까? (향후 3년내 상장 검토 / 장기적 검토 / 계획 없음)
 - ① 없음
 - ② 향후 3년내 상장 검토 중 ③ 장기적으로 상장 검토 중
3. 귀하가 보시기에 귀사가 상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?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.
 - 어렵게 느끼는 점 없음
 - 어렵게 느끼는 점 있음 (복수응답)
 - ① 재무건전성 등 상장심사기준 맞추기 어려움 ()
 - ② 국내 자본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음 ()
 - ③ 각종 공시의무 부담 ()
 - ④ 주주소송·주주간섭 등 부담 ()
 - 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부담 ()
 - ⑥ 재무보고서 작성·주주총회 등 주주관리비용 부담 ()
 - ⑦ 기타 ()
4. (2에 ②, ③으로 응답한 경우) 귀하는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될 경우, 귀사의 상장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 - ① 상장계획 재검토 ② 상장계획 철회 ③ 상장계획 예정대로 추진
 - ④ 밸류업 등 기대되는 만큼 상장계획 더 적극적으로 추진
5. 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? (Y/N)

